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7년 6월 22일

개정 2009년 2월 28일

개정 2011년 7월 1일

개정 2015년 3월 31일

개정 2017년 6월 30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의 학술지에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할 때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학술지 편집 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학술지인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에 적용된다.

제2장 논문 저자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직책상 이유로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한 후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차 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논문 및 연구계획 심사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해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 자료의 진실성) 논문 저자는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시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저자의 소속 및 직위 표기)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선입견,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의 논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심사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학술지의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사람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특히,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의 정독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2조 (논문유사도검사실시) 논문투고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게재예정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재실시하여 제출한다.
- 제3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표절, 조작, 모방 등과 같이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학회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회원자격박탈, 본 학술지의 논문투고 금지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해당 논문 게재 취소(내용 첨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8조 (윤리규정의 교육) 본 학회는 회원들에게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및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 제9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제11조 (윤리규정의 공포) 모든 윤리규정은 학회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비정기적으로도 윤리규정의 개정 및 필요에 따라 학회 회원들에게 공포한다.